

스포츠행사 운영자를 위한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1st Edition



스포츠행사 운영자를 위한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1st Edition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1st Edition)

발행일 | 2019년 12월 26일

발행처 | 스포츠안전재단

발행인 | 이사장 이기흥

감수 | 사무총장 김준수

기획편집 | 이준화, 손민기, 정한창

연구 및 개발자 | 책임연구원 백성수, 공동연구원 유상건, 한승진, 양구석, 은홍범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63 웅산빌딩 8층

교육사업팀 |

TEL : 02-421-7375

FAX : 0507-0336-9346

Email : smkgarnett@sports.or.kr

www.sportsafety.or.kr

제작협조 | 대한핸드볼협회

본 매뉴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스포츠행사 운영자를 위한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1st Edition

CONTENTS

I. 일반원칙 3

- 1 안전가이드라인 개요 4
- 2 안전가이드라인 활용 5

II.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6

- 1 운영자의 안전계획 수립 7
- 2 안전인력 13
- 3 경기장 20
- 4 경기운영 28
- 5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35
- 6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41
- 7 안전고지 및 통제 46

III. 참고사항 52

- 1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53
- 2 표준안전계획서 55

I. 일반 원칙

1 안전가이드라인 개요

개발 목적

- ✓ 본 가이드라인은 핸드볼 대회 및 훈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스포츠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대회와 훈련을 책임지는 스포츠행사 운영자와 스포츠지도자가 책임져야 하는 안전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각 담당자의 안전에 대한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발 배경 및 필요성

- ✓ 우리나라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총괄하는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61개 종목) 일부는 안전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 일부 종목은 안전관련 규정이 없거나 안전관련 안내는 있으나 ‘종목별 스포츠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지역 체육단체도 안전 관련 규정이 미흡하거나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 ✓ 따라서, 대회를 운영하는 단체와 훈련을 주관하는 지도자는 사고예방 및 사고 대처 등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회 및 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방법
- 안전인력의 선발, 배치, 교육, 활용과 시설/장소 등의 안전 점검을 위한 내용
- 위급상황발생시 대처방법 등

- ✓ 한편 핸드볼 종목을 생활체육으로 즐기거나 전문선수로 활동하는 사람 중 “부상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그 사례를 조사해보면 ‘심한 부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6%, ‘보통 정도의 부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3%, ‘약간의 부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¹⁾.
- ✓ 이처럼, 전문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분야의 대회 및 훈련 등에 참여하는 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핸드볼에 특화된 안전관리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2019, 스포츠안전재단)

2 안전가이드라인 활용

행사 형태(대회/훈련)의 구분

✓ 본 가이드라인은 다수의 팀이 참가하는 대회와 지도자가 지도하는 훈련으로 구분하여 대회용(운영자 측면)과 훈련용(지도자 측면)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니 각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야 합니다.

- 대회 : 대회규정에 의거하여 대회에 출전한 다수의 팀(개인)이 심판의 진행 하에 운영되는 공식 경기를 통해 승부를 겨루는 경쟁적 스포츠활동
- 훈련 : 개인 또는 팀이 각 팀의 경기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활동(체력훈련, 기술훈련, 멘탈훈련, 전술훈련, 실전훈련, 친선경기 등)

구분	대회	훈련	비고
규정	대회규정	지침 등	
주요인력	운영자, 참여자, 관계자 등	지도자, 선수 등	대회규정
장소	규격화된 경기장(시설), 외부장소(바다, 도로, 산 등)	일반 경기장(시설) 또는 외부시설 등	대회규정
경기/경기 장비	필수	선택적(훈련 시 경기 가능)	대회규정
주요책임자	주최자, 운영자	지도자	
통제	강함(장소, 시설 이용 등 제한)	약함	대회규정
보상	주최자 보험 등	개인/팀(단체) 보험	

〈표 1〉 대회와 훈련의 구분

행사 특성 및 규모에 따른 활용법

- ✓ (행사특성) 전문체육/생활체육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며, 행사 규모 및 행사의 특성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사항을 상황에 맞게 채택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 ✓ (행사규모) 참여자(선수, 관람객, 관계자 등) 수를 기준으로 소/중/대 규모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으며, 그 규모에 따라 각종 안전 구비 요건 등이 달라지므로 행사 규모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구분	소형대회	중형대회	대형대회	비고
참여자수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1일 참여자 수

〈표 2〉 행사규모 구분

행사 장소에 따른 구분

- ✓ 본 가이드라인은 실내 및 실외 경기장에서 대회 및 훈련을 고려하였으므로 행사장소(실내경기장, 실외 경기장, 야외)에 따라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선택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II.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1 운영자의 안전계획 수립

안전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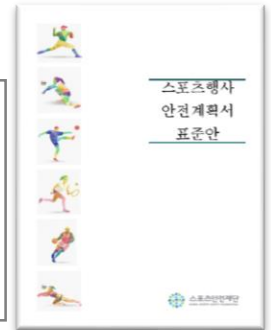
대회계획 수립 시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목표 설정’을 해야 합니다.

- ✓ (안전계획 수립) 대회 및 훈련 시 모든 참여자(운영자, 선수단, 관람객 등)가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계획을 대회/훈련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전계획서

- 경기장, 경기운영, 시설 및 물자, 안전인력 배치 및 활용, 위급 상황발생 시 대처방안 등 안전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참고 ‘스포츠행사 안전계획서’ 참조



〈표 3〉 안전계획 수립

- ✓ (목표설정) 안전계획은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안전총괄책임자의 안전 철학과 주요 메시지를 담는 것도 좋습니다.

- 목표설정은 과거 동일 행사의 사고건수 및 부상자수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000년도 00월	0000년 00월	비고
사고00건 / 부상자00명	사고00건 / 부상자00명	사고00건 / 부상자00명 감소

최근 3년간 사고현황	0000년		0000년		0000년	
	사고건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부상자수
	00	00	00	00	00	00
참여자규모	000,000명		000,000명		000,000명	

*사고 : 통원치료를 하는 수준의 사고에 한함.

〈표 4〉 대회/훈련 안전목표

1 운영자의 안전계획 수립

안전을 위한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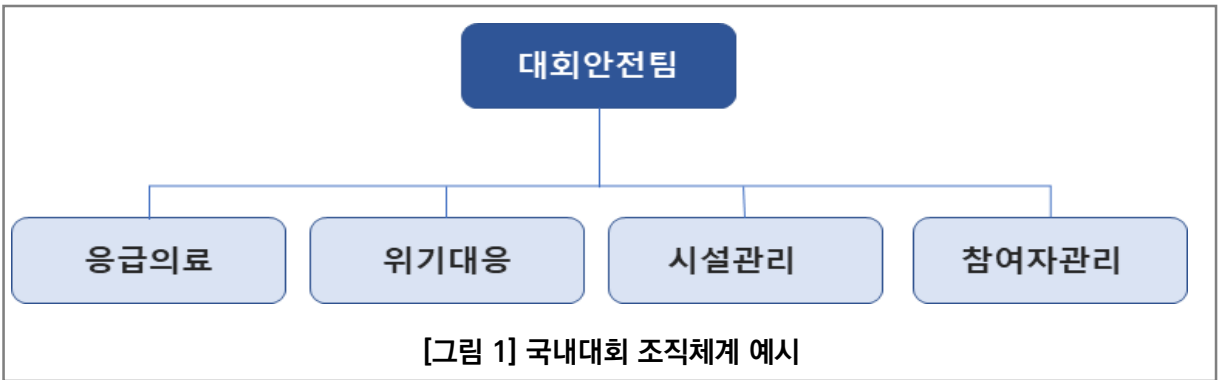
TIP

안전계획 수립 시 내부 및 외부 안전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 **(내부 조직체계)** 내부의 대회 안전 조직은 대회 규모에 따라 선수단의 입국부터 출국, 대회운영 등에 있어서 사고 예방 및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대회 규모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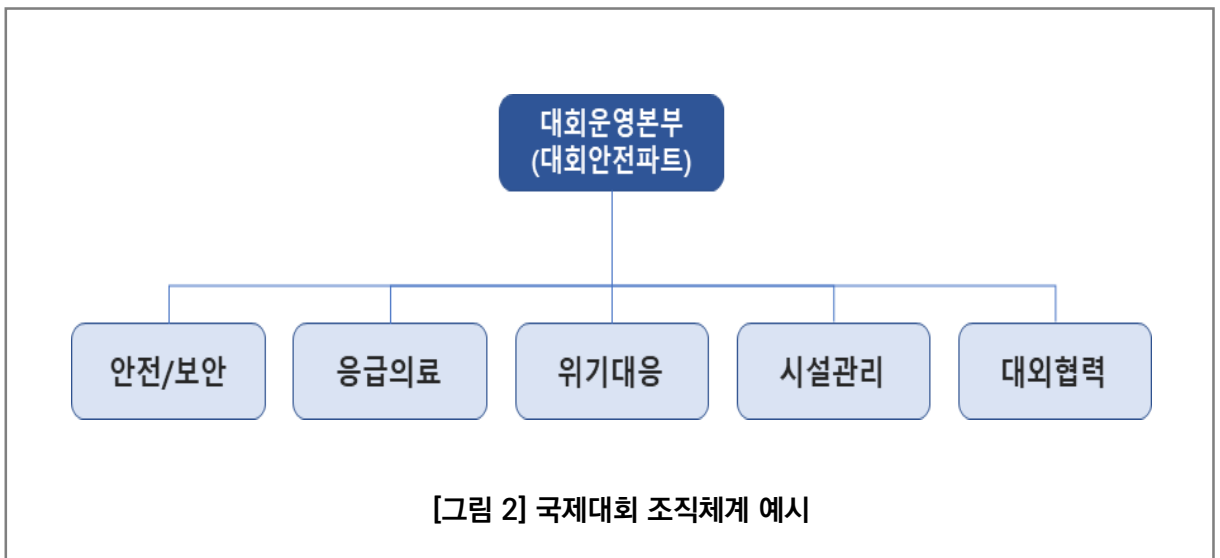
국내대회

운영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일팀으로 구성이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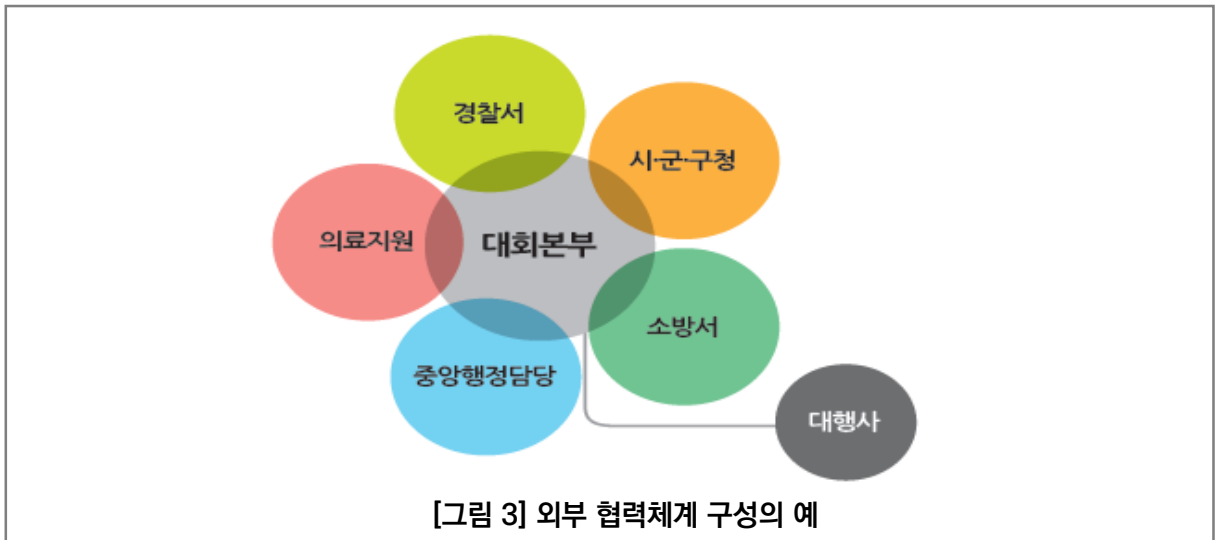
국제대회

국제연맹 및 국내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 중 다수의 관중이 입장하는 대회, 선수단 및 대회에 대한 책임 등이 국내/국제연맹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1 운영자의 안전계획 수립

- ✓ (외부 협력체계) 대회운영본부 외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²⁾하되 경찰서, 소방서, 병원, 시군구청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 (조직체계 공유) 조직체계 구성이 완료되면 담당자 및 관련 기관의 연락처를 작성하고 조직 내·외부에 공유하도록 합니다.

업무구분	담당자	연락처	협력기관	전화번호	비고
안전담당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보안담당					
시설담당					대회시설운영자
참여자관리	선수단				
	심판				
	관중				
	운영요원				
응급의료			소방구급차	국번없이 119	인근주요 구급기관
			○○○응급센터		
			○○○응급센터		
			○○○응급센터		
위기대응			질병관리본부	국번없이 1339	
			재난관리상황실		재난
			소방서	국번없이 119	화재
			경찰서	국번없이 112	범죄
			국가정보원	국번없이 111	테러
			전력공사	국번없이 125	전기
			가스안전공사	1544-4500	가스
			기상청	국번없이 131	기상
			상수원사업소	국번없이 121	수도

〈표 5〉 행사 안전관리 담당 및 비상연락처(예시)

* 대외협력 기관은 지역별 관련기관 연락처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2) 스포츠안전매뉴얼(운영자용). 스포츠안전재단

1 운영자의 안전계획 수립

위기관리계획³⁾

TIP

대회기간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 **(사전점검 등)** 경기장 시설 및 장비와 관련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받았는지, 규정/규격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분	점검사항	점검시기	점검방법
경기시설	소방, 전기, 상/하수도, 위생 점검	대회확정 전 대회 전	시설점검표 및 관계자 확인
경기구역	경기관련 바닥, 장비, 설치물 등 행사관련 설치물, 장소 등	대회시작 전 경기시작 전	현장 점검
장비 등	팀/개인 장비의 안전성 등	대회시작 전 경기시작 전	현장점검

〈표 6〉 사전점검

- ✓ **(사고예방대책)**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구분	사고정도	사고 장소 및 세부내용	대처방안
주요 사고 현황			

〈표 7〉 사고예방대책

- ✓ **(위기대응능력)** 대회 전 위기관리 및 대응 관련 사전 훈련을 실행하여 안전인력을 비롯하여 모든 운영 스태프가 대회기간 중 사고예방 및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 ✓ **(위기상황대응)** 대회 중 위기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안전인력 및 운영진이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구(휴대폰, 무전기, 확성기, 휘슬 등)를 소지 및 활용하여야 합니다.

3) 2019 FIBA 농구월드컵 아시아예선전_회원국 연맹을 위한 안내서 '위기관리계획'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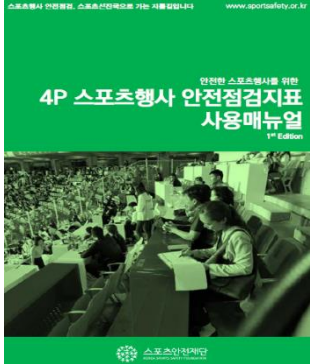
1 운영자의 안전계획 수립

점검 및 모니터링 등

TIP

대회 안전점검 및 현장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 ✓ **(안전점검)** 대회 및 훈련의 안전점검은 자체점검 뿐만 아니라 스포츠안전재단 등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철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p>[점검항목] 안전계획 수립, 안전인력구성 및 활용, 안전점검 및 현장모니터링, 경기장 및 경기운영 안전, 위급상황발생 시 대처방안 등</p> <p>[대회 안전점검] 스포츠안전재단에서 개발한 '4P 스포츠행사 안전점검지표⁴⁾' 등을 활용하여 점검 가능</p> <p>[훈련 안전점검] 본 스포츠 안전가이드라인 활용</p>	
--	---

〈표 8〉 안전점검

- ✓ **(모니터링)** 스포츠안전 계획 수립 후에는 계획대로 대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부항목별, 상황별 모니터링을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대회 계획 및 운영에 반영되어 조치 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현장 모니터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계획 수립 시 계획 및 실행(행사현장 포함) 등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② 안전관련 모니터링은 상황, 시기, 장소 등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③ 모든 모니터링 결과는 사안에 따라 즉시 또는 향후 대회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표 9〉 현장모니터링

4) 점검지표는 기획부문(Plan), 인력부문(People), 장소부문(Place), 물자부문(Product) 80~100여개 지표로 구성

1 운영자의 안전계획 수립

문서 기록 및 관리

TIP

안전 관련 문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문서기록)** 안전과 관련된 안전방침, 회의록 등의 문서는 반드시 기록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안전총괄책임자(주최기관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주최기관담당자), 안전관리자(주관기관책임자)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방침 또는 표준안전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회의록은 필수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주최자, 주관자의 안전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 **(문서관리)** 안전관련 문서는 규정(재/개정포함), 지침, 계획, 승인 문서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안전관련 문서를 관리하는 주관부서를 정해야 합니다.
- 문서대장을 작성하여 내/외부 수신, 발신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안전관련 문서는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 **(안전사고보고서)**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개요, 사고경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사고보고서 양식 예시〉

- 사고개요
 - 일 시 : 2020. 00. 00(○요일) 00:00
 - 장 소 : * 주소, 경기장 및 관람석 등 세부장소 표기
 - 원인(경위) :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명, (부상) 명
 - 재산피해 :
- 사고내용(경위)
- 조치사항(환자, 현장) : 환자 조치사항(환자상태 포함), 현장 조치사항
- 보험가입 여부 및 배상계획
- 향후 조치계획

2

안전인력

안전인력 구성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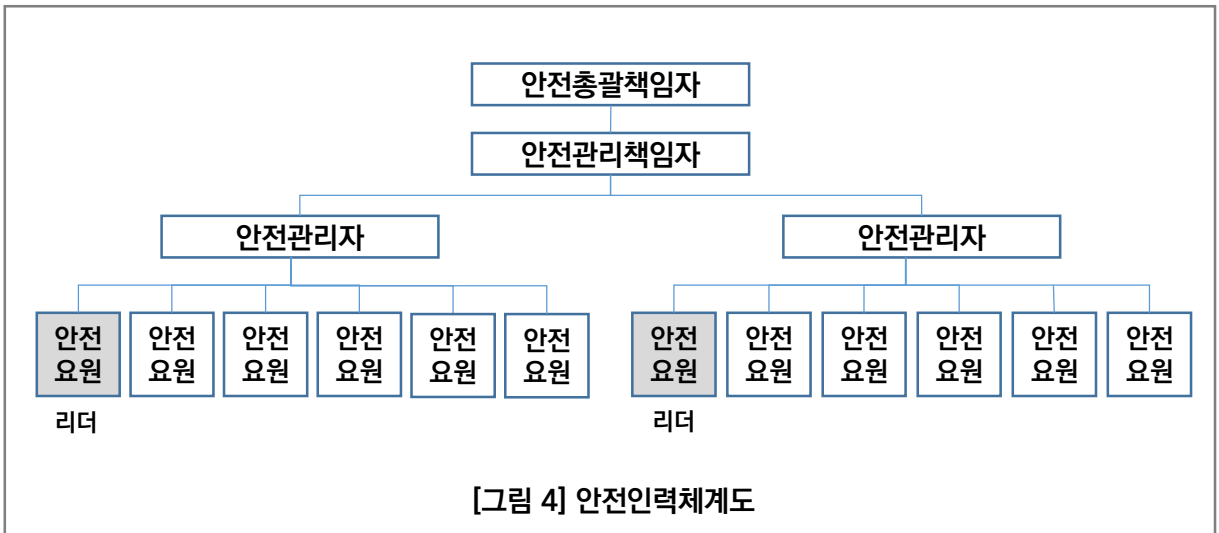
대회 안전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전인력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 **(안전인력)**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운영스태프)으로 구성하며, 안전 관련 사항은 체계적으로 관리(지시, 보고, 통제) 되도록 해야 합니다.
- ✓ **(안전총괄책임자)** '주최 기관의 장 또는 주관 종목단체의 장'으로서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리더십을 지니고 대회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 ✓ **(안전관리책임자)** 대회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대회안전과 관련하여 내·외부 조직과 소통을 통해 안전관리를 책임집니다.
- ✓ **(안전관리자)** 해당 조직의 신입(경력, 직급보유 등)을 받고있는 대회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 하에 안전요원의 관리 및 교육, 현장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안전관련 업무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 ✓ **(안전요원)**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실무자(운영스태프)로서 대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및 위험상황 등에 대해 1차적으로 대응 및 대처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안전요원이 5명 이상인 경우 5명당 1명의 '리더 안전요원'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안전인력구성체계

대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회 안전인력체계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안전인력

- ✓ (운영스태프⁵⁾) 주차, 출입, 안내, 입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참여자 안내/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인력에게 연락 또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분	직무
운영스태프의 직무	① 주차요원(Parking Attendant)
	② 출입보안요원(Gate Security)
	③ 입장권관리요원(Ticket Taker)
	④ 안내요원(Usher)
	⑤ 관리요원(Concessions/Maintenance)
	⑥ 경기장 요원(Field (Playing area) Staff)
	⑦ 보안요원(Security Force)

〈표 10〉 운영스태프의 직무

- ✓ (운영스태프의 주요역할) 각 운영스태프는 다음과 같은 주요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역할
주차요원	① 주차장 내 통제 ② 주차 공간 확보 ③ 교통흐름통제 및 입·출차 안내
출입보안요원	① 반입금지물품 통제 ② 경기장 주변 방어선 확보 ③ 보안검열 ④ 입장권 및 입장자격확인
입장권관리요원	① 입장권 확인(입장권 확인 후 찢기 또는 스캐닝) ② 입장자격확인
안내요원	① 관람석 질서 및 안전유지 ② 관중좌석안내
관리요원	① 경기장 청결 및 안전 유지 ② 음식/음료수/상품 판매 ③ 우발적 사고대응
경기장 요원	① 안전 및 질서 환경 유지 ② 코트 내 권한 없는 출입통제 ③ 관중관찰 및 문제보고 ④ 코트보호 ⑤ 참가팀을 위한 문제해결 및 필요시 경기장으로부터 대피로 확보
보안요원	① 신체적 인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경찰관 또는 경호원

〈표 11〉 운영스태프의 주요역할

5) The National Center for Spectator Sports Safety and Security(NCS4)

2

안전인력

안전인력 선발 및 교육

TIP

안전인력은 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여 적절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 (인력선발) 안전인력은 개별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 필요역량]

구분	직무 및 역량
안전관리책임자	① 대회안전 총괄기획 및 관리 능력(리더십) ② 관계자/협력 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내·외부 조직과의 소통능력) ③ 대회운영 노하우 ④ 인력관리 ⑤ 대회운영, 스포츠시설관리, 경찰, 응급관리, 화재/재난관리, 응급의료 등과 관련된 지식 ⑥ 협회 임원, 고위직 이상 직급

〈표 12〉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

[안전관리자 필요역량]

구분	직무 및 역량
안전관리자 ⁶⁾	① 스포츠운영 안전계획 수립, 실행, 평가, 피드백 등 실행/관리 능력 ② 안전요원의 선발, 교육, 관리 ③ 대회운영 노하우 ④ 환경점검, 사고발생시 조치, 사후관리, 공제처리, 안전 프로그램 구성 ⑤ 관계자/협력 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⑥ 대회운영, 스포츠시설관리, 경찰, 응급관리, 화재/재난관리, 응급의료 등과 관련된 지식 ⑦ 관리직 수준 이상 직급

〈표 13〉 안전관리자의 역량

6) 스포츠안전운영자의 직무역량(스포츠안전재단)

2

안전인력

[안전요원 필요역량]

구분	직무 및 역량
안전요원 (운영스태프의 안전업무)	① 대회 참여자 관찰 및 관리 ② 위기상황발생시 초동 대응/대처법(권고사항) * 심폐소생술, 지혈, 초기 화재진압, 참여자 대피 유도 등 ③ 관리자 보고 및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④ 스포츠안전재단, 대한안전연합,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발급하는 스포츠안전관리사, 응급구조사, 응급처치, 인명구조요원 등 관련 자격증 취득자(권고사항) ⑤ 일반직, 고용직 수준 직급

〈표 14〉 안전요원의 역량

✓ (인력교육) 안전인력은 안전의식 함양 및 대처능력 배양 등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인력 교육은 대회별 최소 1회 이상의 교육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	내용
교육내용	① 대회 내용숙지 : 대회시간, 경기장 시설, 참여자 규모 및 특성 등 ② 역할 숙지 : 개별 업무, 배치 및 활동 영역 등 확인 * 업무 : 위치(경기장 내/외 또는 경기장 구역에 따른 동선 등) ③ 위급상황에서의 행동절차 : 현장조사, 신고(연락), 처치 및 도움 ④ 응급처치 장소, 물품 등 : 소화기, 대피로,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센터 등의 위치 숙지 ⑤ 응급처치법 :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⑥ 기타사항 : 재난 상황에 따른 대처법, 관중 대피 방법 등

〈표 15〉 안전인력교육내용

2

안전인력

✓ (현장대응 역량강화) 사전 훈련을 통해 안전인력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필요시).

구분	내용
대응역량강화	① 실제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안전인력교육은 경기장의 규모나 특성에 맞춘 실습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② 특히, 신속한 신고를 위해 경기장 부근 협조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안전관리, 시설관리, 의료관리 책임자 등의 연락처는 단축번호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③ 대피 및 유도 방법은 평상 시 체계적인 훈련과 실습을 하지 않으면 당황하거나 긴장하여 대처가 늦고, 큰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전파, 비상벨 작동, 대피 및 유도 방법도 실제 상황과 같이 완전히 숙달되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표 16〉 대응역량강화 교육

2 안전인력

안전인력 배치 및 활용

TIP

안전 인력은 적정 규모로 배치되고, 적정 위치에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 ✓ (인력배치) 대회 규모, 경기장의 구조 등에 따라 안전인력이 대회장소 전 구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인원) 참여자(선수단, 관계자, 관람객) 500명을 기준으로 안전인력을 배치합니다.

구분	1000명 이상	500~1000명	500명 미만
안전관리책임자	2명(권장)	1명	1명
안전관리자	2명	2명	1명
안전요원(운영스태프)	8 - 10명	6-8명	5-6명

〈표 17〉 인력배치인원

※ 〈표 17〉은 국제대회 기준의 배치인원 권장(안)이므로, 소규모 국내대회(생활체육대회, 학교체육대회 등) 운영 시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단, 소규모 대회에 적은 인원을 배치하더라도 배치에 대한 기준과 역할분담은 분명해야 합니다).

※ 대규모 경기 또는 국제대회의 경우 참가팀별 안전요원 1인, VIP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2인을 추가로 배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 다수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경우, 운영스태프(안전요원+자원봉사자+검표원 등) 대비 관람인구 비율은 1:250 수준을 권장 합니다⁷⁾.

- (배치장소) 안전인력은 대회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시_실내체육관에서 1,000명 이상의 참여자가 있는 경우>



[그림 5] 안전인력 배치장소

7) '안전 관리'(영국 스포츠경기안전국) 권장 기준을 준용

2 안전인력

✓ **(안전요원 배치)** 실내체육관에서 1,000명 이상의 참여자가 있는 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운영스태프는 8~10명을 권장하며, 사각지대가 없이 균등하게 배치하여, 상황발생 시 즉시 관찰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주요 배치구역)** 대회 시 주요 배치구역은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안전요원 10명 기준).

- 선수 및 운영관계자가 출입하는 1층 출구(1명)
- 1, 2층 관중석 입구(각 1명, 총 3명)
- 1층 경기장 주변 (2명)
- 2층 관중석(4명)

✓ **(인력활용)** 안전요원은 대회장소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정된 공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연락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점검현황, 근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복장 등	안전요원은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복장(형광색, 노란색 등)의 착용을 권장하며, 표식(예, AD카드)을 착용하여 누구나 안전요원임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통신장비	무전기, 휴대전화, 확성기, 휘슬 등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표 18〉 인력활용

3 경기장

대회 장소의 적정성

TIP

경기장은 안전성, 수용인원, 경기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 (일반원칙⁸⁾) 일반적으로 대회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	고려사항
장소적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훈련시설 여부 - 경기 코트(Court)의 상태가 대회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히터 및 공기환기장치(heat and ventilation)의 적합 여부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대회 시 경기장의 공기환기장치는 시간 당 평균 2회 사용을 권고합니다. - 차량 이동 및 주차 편리성 여부 - 훈련 장소와 관계기관과의 접근성 여부(병원, 소방서 등 협력기관과의 거리 등) - 차량/보행자 이동통로, 비상구 등이 안전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 경기장 내 수도(식수 포함), 소방, 전기, 가스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 - 화장실, 탈의실 등이 안전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장, 탈의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 시설을 이용하되 이동 및 위생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곳을 택해서 이용합니다.

〈표 19〉 장소적합도

8) '2013 EVENT SAFETY ALLIANCE OF USA' 자료를 준용하여 재구성

9) Design Guidance Note(Badminton)_Sport England(2011)

3 경기장

핸드볼 경기용 시설 및 장비

TIP

시설 및 장비는 ‘대한핸드볼협회 경기규칙’을 준수하여 구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 ✓ **(일반원칙)** 핸드볼 경기용 시설 및 장비는 대회 시 선수 및 관중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	대회 시설 및 장비 목록
시설	- 경기코트(Play court)
	- 교대 라인(Substitution lines)
	- 광고 영역(Advertising area)
장비	- 골(그물 망 포함) (Goal)
	- 공(Ball)

〈표 20〉 대회 시설 및 장비 목록

- ✓ **(적용예외)** 불가피하게 기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설치된 시설 및 장비가 최대한 제시된 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안전조치(안내, 통제, 보수, 고지 등)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 ✓ **(경기코트(Play Court)¹⁰⁾** 경기장의 바닥(floor)은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해 수평 구조를 유지해야 하며, 선수의 부상 예방을 위해 경기장 바닥 설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기코트 기준¹¹⁾

- 경기장 이용 계획과 무관하게 하부 구조는 수평이어야 한다.
- 경기장 바닥 시스템은 보호, 스포츠 및 기술적 특성의 측면에서 하부 구조에 적합해야 한다.
- 경기장 기본 층이 스프레드 또는 콘크리트로만 구성된 경우, 스포츠 바닥 아래의 하부 구조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연한 목재 바닥 시스템(목재 연동 하층)을 사용하여야 한다(스프레드 또는 콘크리트에 경기장 바닥을 직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선수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10) ‘EHF Arena Construction Manual 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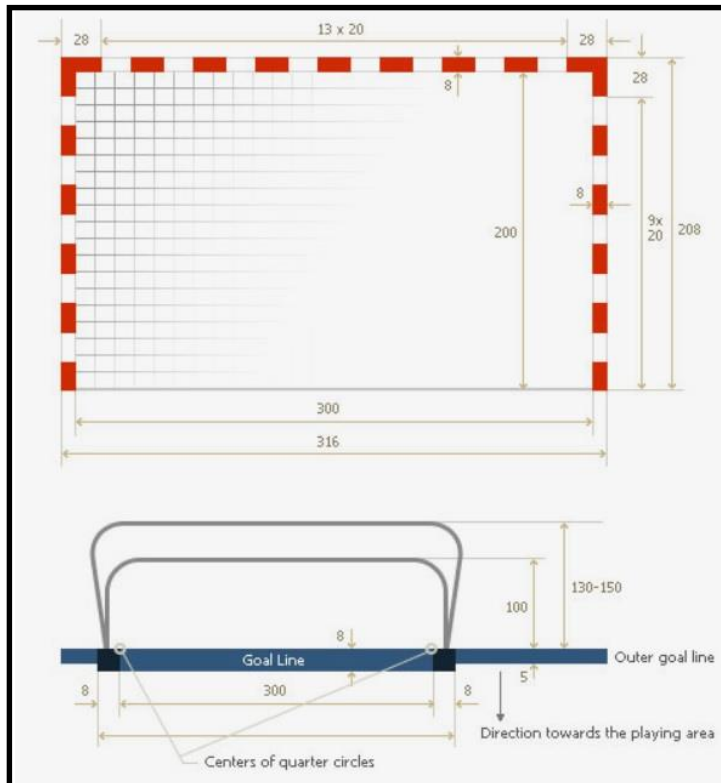
11) ‘대한핸드볼협회 경기규칙 규칙1. 경기장’ 참조

3 경기장

✓ 골(Goal¹²): 규격, 색상, 재질, 위치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골 기준

- 골의 안쪽 규격은 가로 3m, 세로 2m이다. 골 프레임은 직사각형이어야 한다.(안쪽 대각선이 360.5cm(최대 361cm - 최소 360cm), 골의 차이가 최대 0.5cm)
- 골의 내부 높이는 2m, 폭은 3m가 된다.
-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8cm×8cm의 정사각형으로 한다.
- 골포스트의 뒤쪽 면은 골라인의 뒤쪽 모서리와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한다.(골포스트의 앞쪽 면이 바깥쪽 골라인의 앞쪽 3cm에 있어야 한다.)
-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동질의 물질(예. 나무, 가벼운 금속 또는 합성물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반경 4±1mm로 둥글게 된 모서리로 된 8cm의 정사각형 띠가 있어야 한다.
- 골은 양쪽 골라인의 중앙에 위치하며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 골은 바닥이나 뒤쪽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 크로스바로 연결된 골포스트의 뒷면은 골라인의 뒤쪽과 일직선이 되도록 세운다.
- 경기장에서 보이는 삼면은 주위 배경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색상으로 한다.
- 골 안으로 골인된 볼이 즉시 되돌아 나오지 않도록 골 뒤에 골망을 부착한다.



[그림 6] 골 정면도

12) '대한핸드볼협회 경기장과 골 가이드라인' 참조

3 경기장

✓ **공(Ball):** 공의 소재와 연령별 사이즈를 고려하여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 기준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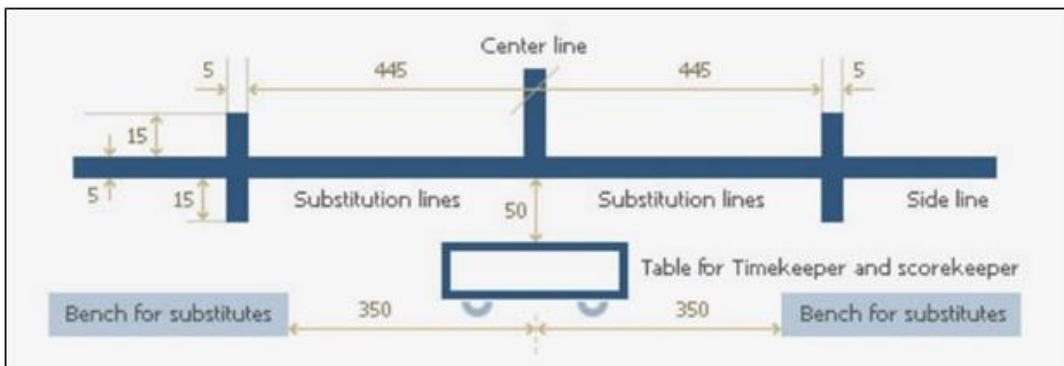
1. 공은 가죽이나 합성수지를 소재로 제조한 구형이어야 한다.
2. 공 표면이 번쩍거리거나 미끄러워서 안 된다.
3. 사용되는 공 사이즈는 각각 다음과 같다.
 - 58-60cm, 425-475g (IHF 사이즈 3) : 남자 일반부 및 16세 이상 남자 청소년부
 - 54-56cm, 325-375g (IHF 사이즈 2) : 여자 일반부 및 14세 이상 여자 청소년부, 12-16세 남자 청소년부
 - 50-52cm, 290-330g (IHF 사이즈 1) : 8-14세 여자 어린이부, 8-12세 남자 어린이부

〈표 21〉공 기준

✓ **교대 라인(Substitution lines):** 선수 교체 시 부딪치거나, 혼선이 되지 않도록 교대 라인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교대 라인 기준¹⁴⁾

각 팀의 교대 라인은 센터 라인으로부터 4.5m 지점에 센터라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선으로 경기장 안쪽과 바깥쪽에 15cm 길이로 표시한다.



[그림 7] 교대 라인

13) '대한핸드볼협회 경기규칙 규칙3. 볼' 참조

14) '대한핸드볼협회 경기장과 규칙1. 경기장' 참조

3

경기장

- ✓ **광고 영역(Advertising area):** 광고판의 규격 및 바닥 광고의 소재를 고려하여 경기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광고 영역 기준¹⁵⁾

- 주변 광고판의 높이는 약 1m, 깊이는 약 1m로 설치해야 한다.
- 경기 중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는 광고판은 규정에 따라 이벤트가 준비될 때, 제거하거나 덮어야 한다.
- 바닥 광고는 특정 이벤트에 적용되는 광고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바닥에 단단히 부착했다가 다시 제거할 수 있는 접착제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적절한 바닥 설치 지침을 준수하고 최상의 시각적 외관을 보장해야 한다.

〈표 22〉 광고 영역 기준

15) 'EHF Arena Construction Manual 4.6' 참조

3 경기장

부대시설 및 장치

TIP

운영본부, 주차장, 관중석, 무대 등의 부대시설 및 장치 등을 적정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점검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 (운영본부) 대회기간 중 대회운영본부를 대회장 내에 운영하여 안전 등의 사고 예방, 대응 및 대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영본부 (상황실)	- 대회기간 중 상시 운영하도록 합니다.
	- 대회책임자 및 관리자 등이 상주하며 대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회장소, 조직체계, 비상연락망 등의 주요사항은 본부 내에 게시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대회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 상황점검, 인원점검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 사고예방 및 대처를 위해 통신 및 방송 시스템(CCTV, 방송장비, 전화기, 무전기 등)을 완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 운영본부는 비밀, 안전, 보안 등을 위해 접근 가능 인력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해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현장 본부(경기장, 숙소 등)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표 23〉 대회 운영본부

- ✓ (관중석) 약자의 이동을 보장하되, 관중의 이동 및 관람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관중석	-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관중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 모든 관중들은 경기장으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앉도록 해야 합니다.
	- 다수의 관중이 입장하는 경우, 관중석의 좌석번호 등을 안내하여 쉽고 안전하게 지정된 좌석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관중의 접근 가능구역, 좌석별 접근 권한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타 구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접근제한' 등의 구분선을 설치하거나 운영스태프가 통제를 해야 합니다.
	- 관중 등 참여자 모두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 등은 즉시 처리하도록 하여,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관중석 내 계단, 난간 등이 있는 경우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추락, 미끄럼 등의 위험에 대한 주의 안내를 해야 합니다.

〈표 24〉 관중석

3 경기장

✓ **(주차장)** 대회를 위한 적정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 참여자(참여자, 운영자, 관람객 등)을 위한 적정 주차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차량의 이동과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여 제공합니다.
	- 장애인, 선수단, 응급차량, 소방차, 경찰차 등을 위한 공간은 분리하여 제공해야 하며, 응급 및 소방 등의 차량은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별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경기시작 전, 종료 후 주차장 이용자가 밀집되는 시간의 경우에는 주차 안내요원이 안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주차장은 주차라인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임시 주차장 등을 활용할 경우 노면표시를 줄, 끈 등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 주차라인이 없는 경우, 별도로 표식, 줄 등을 활용하여 설정함
	- 주차장 내 차량이 안전하게 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표 25〉 주차장

✓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대회 참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의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화장실	- 대회 참여자의 수를 고려하여, 공중위생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된 화장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 화장실이 부족할 경우 이동화장실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탈의실/ 샤워실	- 선수단을 위한 탈의실과 샤워실은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 탈의실, 샤워실 운영 시 남녀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해야 합니다.
	- 간이 탈의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할 경우, 사방 전면을 가림막 등으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절대 볼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 탈의실 및 샤워실은 가급적이면 안내요원이 이용안내 및 통제를 해야 합니다.
매점	- 다수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회의 경우에는 매점 등을 운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인가된 매점에서 인가된 제품을 판매하는지에 대해 사전점검을 합니다.
	- 음식물의 섭취,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등에 있어서 청결한 상태를 점검합니다.
	- 각종 전열기구, 정수기 등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는지 점검합니다.
	- 제품에 표기된 방법으로 식품을 관리(냉장, 냉동) 하는지 등 전반적으로 식품의 섭취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 26〉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매점

3 경기장

- ✓ (무대, 조명, 이벤트 등) 대회 대회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무대장치, 행사장치, 음향장치는 제품의 사용, 이동, 설치 등을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 ✓ (무대장치) 경기장 장치에 사용하는 합판과 천류는 소방법규에 따라 방염 처리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관리 및 감독해야 합니다.¹⁶⁾

무대장치	- 타워 등 대형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탈방지장치나 추락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장치를 매달 경우 무게에 적합한 와이어로프 또는 철사를 사용하고 하중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경기장 장치를 관람석 구역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어야 하고, 적절하게 보강하고 고정해야 합니다.
	- 관람석 구역에 설치 시 출구와 출구로 가는 이동 통로에 대한 시야에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장치를 조립할 때 기둥 및 받침대는 장치의 무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무대에 견고히 고정해야 합니다.
	- 사용하고자 하는 행사용 위험물질이나 위험물품의 저장과 운송에 대한 계획을 행사장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 특수효과 장비, 폭죽장치 등
	- 모든 장비, 장치, 위험물질은 제조사의 권고사항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저장, 사용, 운송, 폐기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표 27〉 무대장치

- ✓ (조명 및 음향 장치) 비상방송 안내 마이크는 상시 운영하고 설치물 및 전선 등은 참여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조명 및 음향 (일반 행사 시)	- 조명기구 또는 스피커를 매다는 경우 추락방지용 안전 고리를 부착하고, 각 기구의 무게가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바닥 배선용 전선 등은 출연자, 스태프, 장비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절연이 가능한 보호 덮개로 덮도록 해야 합니다.																												
	- 이동용 전선, 접속기기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용품설치기준 등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음향기기 ¹⁷⁾ 는 소음도 및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청력 손상이 없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소음도</th> <th>기준 지속시간</th> <th>소음도</th> <th>기준 지속시간</th> </tr> </thead> <tbody> <tr> <td>85 dB(A)</td> <td>8시간</td> <td>103 dB(A)</td> <td>8분</td> </tr> <tr> <td>88 dB(A)</td> <td>4시간</td> <td>106 dB(A)</td> <td>4분</td> </tr> <tr> <td>91 dB(A)</td> <td>2시간</td> <td>109 dB(A)</td> <td>2분</td> </tr> <tr> <td>94 dB(A)</td> <td>1시간</td> <td>112 dB(A)</td> <td>1분</td> </tr> <tr> <td>97 dB(A)</td> <td>30분</td> <td>115 dB(A)</td> <td>30초</td> </tr> <tr> <td>100 dB(A)</td> <td>15분</td> <td>-</td> <td>-</td> </tr> </tbody> </table>	소음도	기준 지속시간	소음도	기준 지속시간	85 dB(A)	8시간	103 dB(A)	8분	88 dB(A)	4시간	106 dB(A)	4분	91 dB(A)	2시간	109 dB(A)	2분	94 dB(A)	1시간	112 dB(A)	1분	97 dB(A)	30분	115 dB(A)	30초	100 dB(A)	15분	-	-
	소음도	기준 지속시간	소음도	기준 지속시간																									
	85 dB(A)	8시간	103 dB(A)	8분																									
88 dB(A)	4시간	106 dB(A)	4분																										
91 dB(A)	2시간	109 dB(A)	2분																										
94 dB(A)	1시간	112 dB(A)	1분																										
97 dB(A)	30분	115 dB(A)	30초																										
100 dB(A)	15분	-	-																										

〈표 28〉 조명 및 음향

16)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17) 공연장 안전 매뉴얼, 한국산업기술시험원(2009)

4 경기운영

선수단의 안전점검

TIP

선수단은 자체점검을 통해 부상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지도자를 포함한 선수들은 대회 참가 시 건강상태,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안전 장비 착용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부터 선수, 의료진까지 모두 선수단의 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회 전 선수단 안전점검	- 근육, 관절, 심장 및 호흡기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 사전 부상부위를 점검합니다.
	- 영양섭취 상태를 점검합니다.
	- 음주여부 및 컨디션을 점검합니다.
	- 안전장비(보호대, 압박슬리브 등) 착용을 지시하고 장비를 점검합니다(필요시).
	- 위기상황 및 부상 발생 시 대응방안 숙지 여부를 점검합니다(염좌, 파열, 뇌진탕 등에 대한 대처법 등).
	- 재난(화재, 지진, 풍수해 등) 발생 시 행동요령숙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표 29〉 선수단 안전점검 고지사항(예시)

4 경기운영

심판/경기감독관 등의 안전점검

TIP

심판/경기감독관은 각종 재난(천재지변, 미세먼지, 오존 등) 상황부터 경기장 내부의 위험요소 등을 확인 또는 점검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 (미세먼지) 실외 경기 시 미세먼지 농도 및 지속시간에 따른 대응/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 실내경기 시에도 선수/관중 이동, 야외 이벤트 유무 등을 고려하여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회연기 및 취소¹⁸⁾

- [초등학교] 주의보 단계에서 대회 취소를 권장합니다.
- [청소년 및 성인] 경보단계에서 대회일 연기를 권장합니다.

미세먼지 정보

- 환경부 에어코리아 (<https://www.airkorea.or.kr>)
⇒ 메인화면 좌측의 '초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등급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운영지침
나쁨	81 - 150	36 - 75	당일 경기시간 조정 경기 연기 권장
매우나쁨	150 이상	76 이상	당일 경기 연기 적극 권장

등급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운영지침
주의보	150 $\mu\text{g}/\text{m}^3$ 지속	75 $\mu\text{g}/\text{m}^3$ 지속	경기 연기 권장
경보	300 $\mu\text{g}/\text{m}^3$ 지속	150 $\mu\text{g}/\text{m}^3$ 지속	경기 연기 적극 권장

〈표 30〉 미세먼지 대응매뉴얼_스포츠안전재단¹⁹⁾

18) 대한축구협회(U리그) 미세먼지 적용기준

19) 스포츠안전재단 미세먼지·폭염 대응매뉴얼

4 경기운영

- ✓ **(폭염)** 실내경기의 경우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하나 야외 이벤트가 있는 경우 폭염을 고려하여 경기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최고기온 33℃ 이상 폭염주의보가 발생된 경우, 외부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외부에서 개최되는 대회는 연기를 권장합니다.

구분	주의보	경보
폭염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표 31〉 폭염 주의보/경보 기준²⁰⁾

- ✓ **(오존)** 실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는 경우 오존 농도를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오존 경보가 발령된 경우 야외대회는 제한하고 중대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회를 금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	오존농도(ppm)	행동권고
주의보	0.12ppm이상	일사량이 많은 시간대(14~16시) 야외 대회 자제
경보	0.30ppm이상	일사량이 많은 시간대(14~16시) 야외 대회 제한 권장
중대경보	0.50ppm이상	야외 대회 금지 권장

〈표 32〉 오존 농도에 따른 행동권고(안)²¹⁾

- 오존 정보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web>)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경기장)** 경기 전 선수단의 보호를 위해 경기장 상태(바닥, 골대, 골망, 보호대 등)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경기장 안전점검	- 경기 중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즉시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 경기장비 등의 파손 시 대체, 이용금지, 보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훈련장 주변에 위험한 장애물 등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기타 부상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표 33〉 경기장 안전점검

20) '미세먼지·폭염 대응매뉴얼(스포츠안전재단)' 참조

21) '에어코리아(한국환경공단) 기준' 참조

4

경기운영

✓ (장비점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장비점검	- 경기에 사용할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표 34〉 장비점검

4 경기운영

대회운영의 안전점검

TIP

모든 관계자는 대회장소 및 관람객 등을 위한 안전 점검 및 관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 ✓ **(점검/관리)** 대회관련 모든 인력(본부인력, 안전인력, 운영인력)은 대회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점검/관리	- 대회 전 기간 동안 대회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 안전인력 배치, 활용, 사고예방 및 위급상황발생 시 대처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확인 및 안전 점검 등을 수시로 진행합니다.
	-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시설, 응급장비, 대피로, 비상연락처 등을 공지하고 모든 인력이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통로, 비상구, 차량이동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 이동 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전선 등은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안전 관련 문제발생 시 안전인력에게 즉시 보고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표 35〉 대회운영 점검관리

- ✓ **(관람객점검)** 주차에서부터 관람, 퇴장까지 관람객의 안전 보장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람객을 위한 안내, 점검, 행동 등의 관람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반입금지물	세부내역
위험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류(총, 도검류), 화기류, 화약류(폭죽 등), 인화성(부탄가스 등)물질 - 마약류, 생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 파편이 생길 수 있거나 매우 단단한 물질 - 칼, 가위, 깃발, 막대 등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도구
먹거리 및 관련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유리병, 캔 및 1L 초과 PET용기에 담긴 음료(미개봉상태의 1L 이하 PET음료에 한해 1인당 1개 허용하되 PET 마개는 제거함) - 과일 등 던져서 다칠 위험이 있는 음식(미리 잘라온 경우 반입 가능) - 가스버너 등 취사도구 - 아이스박스, 드라이아이스, 얼음 등 관람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품목

〈표 36〉 경기장 반입금지 물품²²⁾

22) 'KBO 경기장 안전정책' 부분 인용 및 수정

4

경기운영

<p>관람객점검</p>	<p>(주차 및 이동) 지정된 주차공간, 이동통로, 좌석 및 부대시설 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p>
	<p>(입장관리) 관람객 출입 시 출입인원 통제활동과 더불어 반입가능 물품에 대한 안내를 하고 현장점검을 해야 합니다.</p>
	<p>(관람석관리) 관람석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석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이 안내해야 합니다. - 관람석 이동 시 방해되는 적치물 등은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 이동 시 난간, 미끄럼,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 발견 시 접근금지, 안내 등의 별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p>(금지행위) 경기 중 관람객이 좌석 위에 일어서거나 뛰는 등 사고위험행동을 하는 경우와 경기장에 난입, 경기장에 물병 등을 투척하는 행위 등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내를 해야 하며, 위험 행위 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위에 일어서는 경우 : 즉시 안내를 통해 착석하도록 함 - 경기장 난입하는 경우 : 즉시 저지하고 경기장 밖으로 퇴장 조치함 - 물병을 투척하는 경우 : 즉시 안내방송을 통해 투척불가 방송 후 투척자를 운영스태프 (안전요원)가 찾아 주의 조치, 불응 또는 재발 시 경기장 퇴장 유도 - 사진촬영금지(대회 규모 및 규정에 따라)의무 위반: 안전요원이 즉시 통제 -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 촬영 시 플래시를 사용금지 위반: 안전요원 즉시 통제
	<p>(위급상황안내) 경기장 이용 시 주의사항 및 대피로,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절차와 더불어 비상 연락처를 안내해야 합니다.</p>
	<p>(통제구역) 관람객이 접근하지 못하는 구역(선수단 구역, 전기실, 설비실, 운영실 등)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을 운영해야 합니다.</p>

〈표 37〉 관람객점검

4

경기운영

구 분	조 치
반입금지물품의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	경고 후 입장거부
반입금지물품의 장내소지자	경고 후 퇴장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보관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입장거부
타인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자	경고 후 퇴장
상습적인 금지행위자로 대회주최 측 혹은 구단이 정한 자	입장금지
정치/종교/인종차별 등 개인이나 단체의 주의/주장 행위	입장거부 또는 퇴장
개인/단체 이익을 위한 상업적 행위 및 상대(팀)를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 행위자	경고 후 입장거부 또는 퇴장
폭력적 행위(언어폭력 포함)	퇴장 및 경찰인계(필요시)
출입도구(티켓 등) 미 소지자	입장거부 또는 퇴장
지나친 알코올 섭취자	경고 후 입장 거부 또는 퇴장
범죄행위 기도자, 불법스포츠도박 관련으로 의심되는 자	현장 보존 후 경찰인계
코트 난입, 투척 등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퇴장 및 경찰 인계

〈표 38〉 경기장 금지행위²³⁾(예시)

23) 'KBO 경기장 안전정책' 인용

5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응급의료

TIP

대회 기간 중 부상, 사고 등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 **(응급센터)** 대회장 내에 모든 참여자(선수단, 관계자, 관람객 등)를 위한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 **(응급대원 및 용품)** 대회 규모에 따라 최소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1명을 포함한 최소 2인의 응급 의료원을 상시 대기하도록 하며, 응급 용품(응급처치 상자, 들것,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갖추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대원 및 용품	- 대회 장소가 2개 이상일 때 : 경기장마다 응급센터(권장), 응급 용품 비치(필수)
	- 국제대회의 경우 ²⁴⁾ : 경기 전 30분 뿐만 아니라 전 경기 시간 동안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해야 하며, 치료 가능한 구급차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표 39〉 응급대원 및 용품

- ✓ **(구급차)** 대회 기간 중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위치에 대기하며, 이동 시 장애물 등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구급차	- 경기 코트, 응급 치료소, 관람석 등에 가까이 위치해야 합니다.
	- 구급차 대수는 대회 참여자 500명당 구급차 1대를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 단, 국제대회와 성인 전문체육 등에는 선수단용 구급차 1대를 추가 배치를 권장합니다.
	- 서로 원거리에 있는 다수의 경기장에서 대회를 진행하는 경우, 경기장별로 위의 기준을 따라 구급차의 대수를 늘려야 합니다.
	- 구급차의 접근과 이동에 방해받지 않는 적절한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²⁵⁾ .

〈표 40〉 구급차

- ✓ **(병원²⁶⁾)** 위급상황 시 의료행위 등을 위한 최소 2개 이상의 협력병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긴급 연락 및 이송 등을 위해 병원 정보를 담당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병원명	위치	담당자 / 연락처	이동거리(Km) 소요시간(분)	진료시간

〈표 41〉 협력병원 연락처

24) 'EHF Arena Construction Manual 3.3' 참조

25) 'EHF Arena Construction Manual 3.3' 참조

26) '2019 FIBA 농구 월드컵 회원국 연맹을 위한 안내서 4(기타응급상황)' 참조

5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소방 및 전기

TIP

소방 및 전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대회 사고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소방) 대회장 소방 관련 용품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 대회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소방책임자와의 면담 및 관련 서류, 기록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용품) 소화설비(자동소화 장치, 소화전 등), 경비설비(누전경보기, 감지기 등), 피난 구조설비(비상조명등) 등을 포함합니다.

소방용품	- 소방용품은 적정 제품검사(KC인증마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또는 제39조 제2항의 제품검사
	- 분말형태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해당 소화기는 정기점검 및 제조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용품비치) 소화용품(소화전, 소화기 등) 앞에 부적절한 설치물 또는 비치물이 있다면 해당 설치물 및 비치물을 해체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동기능점검의 기록표	종합정밀점검의 기록표
<p>소방시설 점검기록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점검업체명 :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사 외 명 • 점검의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p><small>「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small></p> <p>대상명 :</p>	<p>소방시설 점검기록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점검업체명 :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사 외 명 • 점검의 구분 : 종합정밀점검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p><small>「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small></p> <p>대상명 :</p>

[점검기록표 양식²⁷⁾]

〈표 42〉 소방

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5' 참조

5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 ✓ (소방_실외) 실외에서 대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화재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천막 및 데스크 등을 설치할 경우 이동식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 대회장 내에는 인화성 물질 반입 및 무단 취사 등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 ✓ (흡연) 구역은 별도로 설치하고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기 또는 방화사, 방화수 등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경기 장소가 금연구역²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 설치를 금지합니다(예시 : 공원, 체육시설 등).
 * 지자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


〈표 43〉 흡연

- ✓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질) 참여자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 경고 표지를 부착합니다.

 인화성물질경고 <small>인화성물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류 : 폭죽, 연막탄, 화약류, 조명탄 등 - 인화성 물질: 인화성 가스(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및 인화성 액체(휘발유· 페인트 등). - 기타 위험 물질 : 드라이아이스 등
---	--

〈표 44〉 인화성, 폭발성, 유독물질²⁹⁾

- ✓ (전기)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고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p>KC인증 마크 확인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은 소방용품과 전기용품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단자(함), 고압전기설비 등에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며, 경고 등의 표식을 해야 합니다. - 안전을 위해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때,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선은 커브, 테이프 등을 통해 이동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지붕,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의 경우, 지붕 및 기둥 등에 단단히 고정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표 45〉 전기

2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참조

29) ‘야영장업 사업자 안전관리 매뉴얼(문화체육관광부, 2019)’ 참조

5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치안



치안유지, 경비, 테러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 (필수) 치안유지, 경비, 교통 지원 대책은 필수로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수사항	참여자(선수단, 관계자, 관람객) 및 대회시설과 관련된 사고, 범죄 등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치안, 교통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치안관련 사항은 경찰, 경비업체 등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되, 모든 운영스태프가 동참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자는 치안, 경비, 교통 등과 관련된 사건발생 시 치안/경호/경비/교통/대회운영/안전 책임자 등에게 상황이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발생 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연락처는 조직 내·외부에 공유 및 게재해야 합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치안책임자			
경호/경비책임자			
교통책임자			
안전책임자			
운영책임자			

[치안 사건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처]

〈표 46〉 치안유지 필수사항

✓ (테러방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시설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등을 통하여 대테러 센터에 테러예방, 현장지도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추진합니다.

테러방지	의심자의 발견·위협전화 등 테러정보가 입수되었거나 테러 발생 시 국정원(신고처 111), 경찰서(신고처 112), 소방서(신고처 119) 등 관계기관과 시설의 안전책임자 등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야 합니다.
	국제대회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회 등에는 테러예방대책 ³⁰⁾ 을 수립해야 하며, 출입 및 자체 방호계획,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및 비상대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표 47〉 테러방지

30) 다중시설이용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참조

5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위생

TIP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식품, 질병 등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해야 합니다.

✓ (시설물 위생관리³¹⁾) 대회 기간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물은 필요에 따라 소독, 위생 점검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참여자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물 위생관리	(시설일반) 모든 시설(화장실, 관람석, 대기실, 샤워실 등)의 위생 관리가 주기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위생담당자가 지정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위생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 - 위생용품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화장실 ³²⁾) 적정수준의 위생 유지, 지속적 관리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지정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청결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 - 대회기간 중에도 주기적인 청소/청결 유지 여부(화장지 등 비품 포함)
	(매점 ³³) 식품의 판매 및 섭취 등을 위한 공간으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통로/복도 등) 수시로 통로 등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음료 등은 즉시 처리하도록 하며, 휴지통은 넘치지 않도록 비우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표 48〉 시설물 위생관리

✓ (대회 식음료 등) 식품은 식품위생법 상 인가된 제품 및 위생상 안전한 식음료를 제공하거나 판매해야 합니다.

대회 식음료	(식품 등)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먹는 물 ³⁴)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청결한 장소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표 49〉 대회 식음료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참조
 3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참조
 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참조
 34)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참조

5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 (숙박시설³⁵⁾) 공중위생법 상 ‘숙박업허가’를 받은 곳 중 위생상태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환기상태, 객실·침구 등의 청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표 50〉 숙박시설

✓ (질병) 등 필요한 경우 대회 상황, 시기 등에 따라 질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질병	지역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 대회기간에 확산되고 있는 질병을 확인합니다.
	감염병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역 보건소 등과 함께 질병 보유자 확인 및 예방을 위한 확인 시스템 설치·운영, 질병 예방을 위한 세정제, 마스크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표 51〉 질병

3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참조

6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일반 요령

TIP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응급구호조치, 지원요청 순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응급구호조치, 지원요청 및 수습 등의 순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구분	행동요령
초동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현장 주변의 안전요원 및 직원이 상황을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신속한 지원 요청 - 경찰, 소방, 안전요원, 비상대책반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고 대처 - 인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에 지원 요청 - 참여자들의 동요 방지를 위한 질서 유지와 관련한 안내 방송 실시 - 외부인의 사고 현장 접근을 막기 위한 경찰의 차단 조치
응급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발생 시 안전요원이 1차적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구급, 의료 요청
지원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소방서, 병원의 상호 협조 하에 신속히 처리 - 소방차나 구급차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및 경찰은 지원 차량이 신속히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이동지시 및 안내자 배치
행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수습 대책 본부 구성 및 탄력적 운영 - 안전사고 관련 자료 확보 - 사고보고 체계를 통해 사고 조치 상황을 수시 확인

〈표 52〉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_스포츠안전재단

6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TIP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응급처치매뉴얼_스포츠안전재단 참조)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인지, 119신고, 처치 및 도움 순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은 ①상황인지, ②119신고, ③처치 및 도움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3C : Check, Call, Care)
-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위급상황에서의 행동절차, 3C’은 아래와 같은 주요 상황들에 대한 응급처치 증상 및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스포츠안전사고 응급활동 3단계</p> <p>1단계 : Check 상황 인지 위급 상황인지 환자 증상 및 징후 파악하기</p> <p>2단계 : Call 119 신고 최초 발견자 119 즉시 신고하기</p> <p>3단계 : Care 처치 및 도움 사전 응급처치법 교육 내용 위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기</p>	- 상황인지 : 청각적, 시각적, 후각적 징후와 더불어 환자의 증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119 등 신고 : 119 또는 대회안전관리자 등에게 전화를 해서 장소, 환자상태 등에 대해 신고 해야 합니다.
	- 처치 및 도움 : 119 등 신고 후에는 환자를 안심시키고, 기본적인 응급구조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단, 처치에 대한 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 주위 안전요원이 시행하도록 합니다.)
	- 세부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위급상황에서의 행동절차, 3C’를 참고바랍니다.

〈표 53〉 '위급상황에서의 행동절차, 3C'_스포츠안전재단

-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응급처치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주요 상황들에 대한 응급처치 증상 및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First Aid Manual 응 급 처 치 매 뉴 얼</p>	- 심정지(심폐소생술)
	- 골절 : 빗장뼈(쇄골), 팔꿈치뼈(주관절), 무릎뼈(슬개골), 정강이뼈(하퇴), 발목, 발등, 갈비뼈, 척추
	- 염좌 : 염좌 및 좌상
	- 드레싱과 삼각건 사용법
	- 피부 상처 : 지혈, 감염, 기타
	- 고온·저온에 의한 부상
	- 중독
	- 갑작스러운 질병 : 뇌졸중, 당뇨병, 천식, 실신, 발작

〈표 54〉 응급처치매뉴얼_스포츠안전재단


6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 ✓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국민행동요령 응급처치’는 아래와 같은 기타 상황들에 대한 응급처치 증상 및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 - 열사병 - 기도폐쇄 - 벌에게 쏘였을 때 - 뱀에게 물렸을 때 - 개에게 물렸을 때 - 약물(독극물)중독 - 식도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 과 호흡 증후군 - 갑작스러운 질병 : 뇌졸중, 당뇨병, 천식, 실신, 발작
--	--

〈표 55〉 국민행동요령 응급처치_소방청

-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주요 상황들에 대한 단계별 행동요령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발생 시 단계별 행동요령 - 풍수해발생시 단계별 행동요령 - 대설 발생 시 단계별 행동요령 - 한파특보 발령 시 단계별 행동요령
---	--

〈표 56〉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_스포츠안전재단

6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지진, 태풍, 대설,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³⁶⁾

TIP

초동대처 ⇨ 피해신고 ⇨ 안내 ⇨ 대피유도 순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지진 등) 초동대처 ⇨ 피해신고 ⇨ 안내 ⇨ 대피유도 순으로 행동하도록 합니다.

* 세부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구분	단계별 행동요령
초동대처	-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거나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를 차단
	- 승강기는 이용을 금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
	- 화재가 났을 경우, 신속하게 불을 진화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후, 발화된 직후 화재 규모가 작을 때 등 3번의 기회가 있음)
지진피해신고	- 119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신고하고 상황을 전파
	- 화재의 경우 침착하게 화재위치를 알림
	- 가능하다면 세부 화재내용과 인명피해가 있는지 알려줌
안내	- 안내방송, 전광판 자막 및 안전요원을 활용하여 안내
	- 지진이 멈춘 후 안내방송을 실시
	- 대피행동요령, 사고상황, 이동경로, 대피처 도착 후 행동요령과 같은 핵심내용은 반복적으로 안내
대피유도	- 지진 발생 시 유리창, 간판 등이 떨어져 위험하므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도록 안내
	- 참여자 모두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대피 안내
	- 이용자가 일시에 출구로 집중되지 않도록 침착한 상황 설명과 대피 안내를 실시
	- 대피에 필요한 물품(수건 등)이나 휴대품을 소지하도록 안내

〈표 57〉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_스포츠안전재단

36)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 스포츠안전재단 참조

6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 규모 4.0이상의 지진 발생 시 대회 중지 및 취소를 적극 권장합니다.

발표 내용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대회 전	회의소집 ◊ 대회시행검토 ◊ 대회 연기/취소 또는 지진으로 인한 경기장 피해 구역 조치
대회당일	긴급회의소집 ◊ 대회중지(적극 권장) ◊ 취소(적극 권장)
결정권자	행사주최/주관 단체의 장, 경기감독관 등

〈표 58〉 지진규모에 따른 대회중지 및 취소_스포츠안전재단

✓ 풍수해발생시 단계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행합니다.

* 세부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	- 태풍 등의 경로가 경기장 인근을 통과하는 경우 대회는 중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선수단의 안전을 확인하고, 침수된 도로 및 교량 등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
	- 태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떨어지도록 합니다.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물의 접촉을 금지시킵니다.
	- 전도, 감전 등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이동이 제한될 경우, 119 신고 후 지시사항에 따라 행동하도록 합니다.

〈표 59〉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_스포츠안전재단

✓ 대설 발생 시 단계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행합니다.

* 세부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대설 발생 시 행동요령	- 대설특보 발령이 확인되면 대회를 중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선수단을 실내로 이동시키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용품을 제공합니다.
	- 저체온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선수단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구급차를 활용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표 60〉 대설 발생 시 행동요령_스포츠안전재단

✓ 한파특보 발령 시 단계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행합니다.

* 세부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한파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 한파특보는 ‘최저기온 -12℃(주의보) 혹은 -15℃(경보)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됩니다.
	- 한파특보 발령 시 야외훈련은 중단할 것을 권장하며, 선수단의 안전을 확인하고 실외 이동을 제한합니다.
	- 한랭 질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선수단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표 61〉 한파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_스포츠안전재단

7 안전고지 및 통제

안전고지

TIP

대회 시, 모든 참여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 ✓ 대회 전/대회 중,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알림(자료배부, 안내표식, 방송 등)을 하도록 합니다.

대회 전/대회 중	- 대회 전 : 위험, 안전준수, 규정준수, 참가동의 등
안전고지	- 대회 중 : 장소, 시설, 장비, 이동 등에 대한 주의, 위험, 제한 등
- 긴급방송시설 혹은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 거리가 250m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2019 야영장안전관리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표 62〉 대회 전/중 안전고지

- ✓ 안내게시판에는 시설 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 연락망, 이용방법, 안전수칙 등의 정보를 표기합니다.

안내게시판	- 시설 배치도, 대피소, 대피로,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및 이용방법, 비상 연락망, 안전수칙 등의 정보를 표기합니다.
	- 게시판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 게시판은 참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상, 크기로 설치합니다.
	- 게시판의 내용을 가리는 적재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야간 행사시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표 63〉 안내게시판

7 안전고지 및 통제

- ✓ 이때, 대회 현장의 안전고지를 위한 표식 등은 참여자가 원활히 식별할 수 있는 크기, 색상의 표식을 활용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안전표식(예시)	
피난 대피로(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구
	
추락/낙상 표시(한국승강기안전공사)	주의/위험
	

[그림 7] 안전표식

7 안전고지 및 통제

안전 동의



스포츠안전동의서 및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스포츠 활동에 앞서 스스로 스포츠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안전동의서’ 작성을 통해 선수단의 책임감과 안전의식을 고취합니다.

구 분	주요 동의내역	비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별도양식
건강상태	질병/질환, 약물복용, 알러지 증상 등	별도양식
일반동의	경기/안전 관련 규정 숙지, 안전고지 내용 숙지, 대회 주최/주관 측의 지시 및 통제에 따름, 대회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불응 시 퇴장/퇴소 대회 관련 사진, 영상은 주최/주관사에서 활용 가능	별도양식

〈표 64〉 주요동의내역

※ 주요동의내역에 들어갈 항목은 종목특성 및 대회성격에 따라 〈표 64〉를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안전동의서(예시)

* 자세한 동의서 내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동의서’를 참고바랍니다.

본인은 (핸드볼)이 격렬한 신체적 활동(신체적 활동이 구체적인 모습, 높이 뛰거나, 신체 접촉이 있으며 등) 수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 본인은 (핸드볼)에 참가하는 것이 부상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부주의와 상관없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발생 가능한 부상은 다음과 같으며 제시하지 않은 기타 부상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

.

이에 본인은 자발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을 인정한다.

20** 년 월 일 (서명)

〈표 65〉 스포츠안전동의서_스포츠안전재단

7 안전고지 및 통제

- ✓ 이때, 활용내역, 기간, 목적 등을 명시하여 참여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동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대회 참가신청서 또는 대회 현장에서 확인하고 동의(사인)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활용기간	대회 종료 후 즉시 파기(권장)하나 사진 등은 지속 가능	현장 동의 및 서명
활용목적	대회용(건강상태확인, 비상시연락 등), 사진 등은 비영리목적, 홍보용	현장 동의 및 서명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동의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현장 동의 및 서명

〈표 66〉 활용 목적 및 기간

- ✓ 대회참가 등록을 할 때, 응급처치와 후송방법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응급처치 동의서를 통해 선수단은 응급처치 단계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동의서(예시)

* 자세한 동의서 내용은 스포츠 안전재단의 '응급처치동의서'를 참고바랍니다.

- 본인은 스포츠 활동 중 부상이 발생하였거나, 신체적인 손상 혹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지체함으로써 손실을 초래할 만한 상황일 경우,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본인은 (스포츠 종목 또는 프로그램명)에 참가하여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송수단)으로 수송되는 것에 동의한다.

20** 년 월 일 (서명)

참여자 성명

법적 보호자 성명

(19세 미만 참여자의 경우)

〈표 67〉 응급처치동의서_스포츠안전재단

7 안전고지 및 통제

통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통제를 통해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 대회 기간 중 모든 참여자는 대회 관련 규정 및 관련 규제 등에 의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통제에 따르도록 안내를 하고 사고 예방 등을 위한 통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 ✓ 대회 기간 중 통제는 게이트 입장, 관중석 및 경기장 이동, 퇴장까지 고려하여 운영자, 운영 스태프 등에게 참여 대상에 따른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야 합니다.

대상	주요역할	세부내용
관람객	주차장 관리	주차 및 이동 안내, 질서유지 등
	입·퇴장 게이트 관리	시설 출입 관리, 입장/퇴장 안내
	입·퇴장 질서유지 등	질서유지, 이동 안내, 반입금지 물품 등 안내
	출입구 관리	검표, 출입통제, 위험 물품 검사 및 압수 등 조치
	통제구역 접근제한	선수단 구역, 관계자구역, 기타 접근금지 구역 통제
	부대시설 관리	화장실, 매점, 휴게실 등 관리 및 이동 안내
	관람석 관리	좌석 이동, 관람 시 안전 등 관리
선수단 및 심판	선수단 안전 확보	선수단 보호, 선수단 안내 및 선수 구역 통제
	심판진 안전 확보	심판진 보호, 심판진 안내 및 심판실 통제
	진입로, 복도 등 통제	훈련, 경기를 위한 이동 시 통로 등 통제
	경기 구역 통제	훈련, 경기를 위한 경기장 등 통제
	비상상황 대처	경기장 난입, 관중 투척, 싸움 등 대처
관계자	미디어 구역 관리	미디어석 출입통제, 확인 및 관리
	VIP 구역 관리	VIP 의전 지원, 안전 확보
	시설보호 구역 관리	전기실, 가스실, 운영본부 등 접근 제한구역 관리 등

〈표 68〉 대상 및 역할에 따른 주요 통제 활동(예시)

7

안전고지 및 통제

- ✓ 통제를 할 경우,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AD(Accreditation Card) 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회 장소에서 대상별 이용안내를 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통제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선수단	(Player) 경기장, 선수대기실, 탈의실 등 접근 가능
운영본부	(Official) 등급을 부여하여, 전 구역 출입 또는 일부구역 출입제한 등을 표기
운영요원	(Staff) 역할에 따라 일부 구역에만 접근 가능
관람객	(Visitor) 관람석, 부대시설 등 이용 가능
VIP	(VIP) 일부 경기구역 출입 제한 등

〈표 69〉 AD 카드 예시

1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의 이해

- ✓ **(개념)**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재단의 목적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 활동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 ✓ **(의무가입)** 스포츠 참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관련법에 의거 체육 분야의 보험가입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 법 제12조(보험 등 가입) [시행 2015. 6. 28.]

- 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5조(보험가입 등) [시행 2016. 3. 28.]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지부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된 사람의 수와 대회 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법 제26조(보험 등 가입) [시행 2008. 2. 29.]

-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스포츠안전재단)** 체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다년간 운영해오고 있으며,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 및 고객의 니즈(needs)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스포츠안전공제 상품의 분류

✓ (대상) 운영자(주최자), 참여자 등을 위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구분	배상책임형 공제	개인용 공제
상품설명	운영자(주최자)의 책임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	참여자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한 보상
보장내용	운영자의 운영관리상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 운영자의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	주최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 개인이 입은 상해사망사고에 대해 보상 (상품에 따라 배상책임사고 포함)
특이사항	상품에 따라 특약담보 추가로 참여자 개인 과실로 인한 상해사망사고의 치료비 보상 가능	운영자가 가입한 상품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 가능
재단상품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재산종합공제, 수중형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공제	1년형, 단기형, 참여자안심ALL, 강습회, 워크숍, 학교밖, 스포츠여행자공제, 전문체육인상해공제

✓ (대상) 체육행사(생활, 전문)의 운영자와 참여자를 위한 장·단기 상품을 제공합니다.

구분	참여유형	참여기간	상품
생활체육	참여자	장기	1년형
		단기	단기형/참여자안심ALL
	운영자	장기	강습회 / 학교밖 / 주최자배상책임공제
		단기	워크숍 / 강습회 / 학교밖 /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전문체육	참여자	장기	전문체육인상해공제
		단기	참여자안심ALL
	운영자	장기	주최자배상책임공제
		단기	주최자배상책임공제

※ 강습회, 학교밖, 워크숍 등도 배상책임의 성격으로 가입하려면 주최자배상책임공제로 대체 가능

※ 스포츠활동이 없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도 주최자배상책임공제 가입 가능

※ 전문체육선수의 훈련도 주최자배상책임공제로 가입 가능

* 관련문의 : 스포츠안전재단 고객센터 1899-0547

2

표준안전계획서

안전계획서 작성 표준안

『즐겁고·안전한 스포츠행사!』

2020 ○○○○ (행사명)

안전계획서

2020. 00.

이 표준안은 안전한 스포츠 경기와 훈련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스포츠안전재단이 제공하는 기본 양식입니다. 대회 및 훈련(경기) 조직,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연맹)

2

표준안전계획서

1 대회/훈련 개요

- 행사명 :
- 일시 :
- 장소 :
- 참석인원 : 총 명(선수 00명 / 관람객 00 명 / 관계자 00명)
- 주요 대상(※ 주요대상의 연령별, 성별 해당란에 '○' 각각 표기)

구분	연령별						성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어르신	남	여	혼성
비장애인									
장애인									

- 행사성격 : (대회 / 훈련) (전문체육 / 생활체육)
- 행사내용

-
-
-
-

- 주요 참석자

-
-
-

2 주최자 인적사항

- 단체명 :
- 주소 :
- 연락처 : (유선)
- 안전관리책임자 연락처 : (유선) (휴대전화)

2 표준안전계획서

3 안전계획 및 목표설정

안전계획

대회/훈련 시 모든 참여자(운영자, 선수단, 관람객 등)가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계획을 행사/훈련 계획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TIP

목표 설정

과거 동일 행사의 사고건수 및 부상자수를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0000년도 00월		0000년 00월		비고		
사고00건 / 부상자00명		사고00건 / 부상자00명		사고00건 / 부상자00명 감소		
최근 3년간 사고현황	0000년		0000년		0000년	
	사고건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부상자수
	00	00	00	00	00	00
참여자규모	000,000명		000,000명		000,000명	

*사고 : 통원치료를 하는 수준의 사고에 한함.

안전을 위한 조직체계

(내부 조직체계) 안전관련 내부 조직체계를 구성합니다.
 (외부 조직체계) 대회운영본부 외 경찰서, 소방서, 병원, 시군구청의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조직체계 공유) 조직체계 구성이 완료되면 담당자 및 관련기관의 연락처를 작성하고 조직 내·외부에 공유하도록 합니다.

TIP

위기관리계획

대회/훈련 기간 중 빈번히 발생하거나 발생가능 한 위기를 예측,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TIP

구분	사고 정도	사고 장소 및 세부내용	대처방안
주요 사고 현황			

2

표준안전계획서

□ 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등

TIP

대회/훈련 안전점검은 자체점검 뿐만 아니라 스포츠안전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철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획대로 대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는 계획 및 운영에 반영되어 조치 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문서 기록 및 관리

TIP

안전과 관련된 안전방침, 회의록 등의 문서는 반드시 기록물로 작성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관련 문서는 규정(재/개정포함), 지침, 계획, 승인 문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개요, 사고경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안전인력 [대회 운영자에 한함]

□ 안전인력 구성

TIP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으로 구성하여 조직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관련 사항은 안전인력체계에 의해 관리(지시, 보고, 통제) 되도록 하고 주차, 안내 등의 운영인력은 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 발생 시 안전인력에게 연락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안전인력 선발 및 교육

TIP

안전인력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안전의식 함양 및 대처능력 배양 등을 위한 최소 1회 이상의 교육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	필수역량	직급 등
안전관리 책임자	대회 안전 총괄 기획 및 관리 능력, 리더십 내외부 조직과 소통능력, 대회운영 노하우, 인력관리	협회 임원, 고위직
안전 관리자	안전계획 수립, 실행, 평가, 피드백 등 실행, 관리 능력 안전요원의 선발, 교육, 관리, 대회운영 노하우 사고발생시 조치, 사후관리, 공제처리, 안전 프로그램 구성 관계자/협력 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직 수준
안전요원	대회 참여자 관찰 및 관리 위기상황발생시 초동대응/대처법 관리자 보고 및 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 스포츠안전재단, 대한안전연합,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발급하는 스포츠안전관리사, 응급처치, 인명구조요원 및 응급구조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자	일반직, 고용직

2

표준안전계획서

□ 안전인력 배치 및 활용

TIP

참여자(선수단, 관계자, 관람객) 500명을 기준으로 안전인력을 대회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요원은 대회장소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정된 공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연락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실내 대회	구 분	1000명 이상	500~ 1000명	500명미만
	안전관리책임자	2명	1명	1명
	안전관리자	2명	2명	1명
	안전요원	8-10명	6-8명	5-6명
실외 대회 (경기장)	구 분	1000명 이상	500~ 1000명	500명미만
	안전관리책임자	2명	1명	1명
	안전관리자	2명	2명	1명
	안전요원	10-12명	9-10명	8-9명
실외 대회 (야외형, 경기장외)	구 분	1000명 이상	500~ 1000명	500명미만
	안전관리책임자	2명	2명	1명
	안전관리자	5명	4명	3명
	안전요원	13-15명	11-13명	10-11명

5 대회/훈련 장소

□ 대회/훈련 장소의 적정성

TIP

행사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회와 훈련을 구분하여 적합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수용인원) 좌석과 입석의 합계(관람객, 선수단, 운영진 등)를 말하며,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수용인원규모를 산정합니다(대회 운영자에 한함).

규정 구분	산정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

(대회/훈련 장소) 경기장의 상태가 대회/훈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지리적위치) 경기장 접근성, 소방서, 병원 등 협력기관과의 접근성 등
 (편의시설) 차량이동 및 주차, 보행자 이동통로, 참여자를 위한 비상구, 화장실 등
 (안전/위생 등) 경기장 내 수도(식수포함), 소방, 전기, 가스 관련 안전성 등

2

표준안전계획서

□ 대회/훈련용 시설 및 장비

TIP

시설 및 장비는 '종목별 대회/훈련 규칙서(규정) 등'을 준수하여 구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 부대시설 및 장치(대회 운영자에 한함)

TIP

운영본부, 주차장, 관중석, 무대 등의 부대시설 및 장치 등을 적정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점검하고 운영합니다.

6 대회/훈련 운영

□ 선수단의 안전점검

TIP

선수단은 자체점검을 통해 부상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분	세부사항
건강상태	근육, 관절, 심장 및 호흡기 등의 이상 유무, 부상부위 등의 확인
장비착용	보호대, 슬리브, 마우스가드 등 종목에서 정한 장비 일체
사고예방 및 대처	안전한 경기/훈련 활동 및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확인

□ 심판/경기감독관 등의 안전점검(*훈련 시에는 훈련 책임자, 지도자 등)

TIP

심판/경기감독관/지도자 등은 각 종 재난(천재지변, 미세먼지, 오존 등) 상황부터 경기장 내부의 위험요소 등을 확인 또는 점검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실외 경기/훈련 시 미세먼지 농도 및 지속시간에 따른 대응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 실내경기/훈련 시에도 선수/관중 이동, 야외 이벤트/훈련 유무 등을 고려하여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폭염) 실내활동의 경우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하나 실외 활동의 경우 폭염을 고려하여 경기/훈련 개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오존) 실외활동은 오존 농도를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기장) 선수단의 보호를 위해 경기장 상태(바닥, 골대, 그물, 백보드 등)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장비점검) 경기/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위험행위) 경기/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해야 하며, 난폭한 행위 발생 시 규정에 경기 중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상대처) 경기/훈련 중 부상 발생 시 규정 등에 의거 경기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중대처) 관중의 난입, 관중석으로 부터의 투척물 등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표준안전계획서

□ 대회/훈련 운영의 안전점검

TIP

모든 관계자는 대회/훈련 장소 및 관람객 등을 위한 안전 점검 및 관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점검/관리) 대회관련 모든 인력(본부인력, 안전인력, 운영인력)은 대회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람객점검) 주차에서부터 관람, 퇴장까지 관람객의 안전 보장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관람객을 위한 안내, 점검, 행동 등의 관람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7 응급의료, 화재, 치안, 위생

□ 응급의료

TIP

대회/훈련 기간 중 부상, 사고 등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응급센터 및 용품)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센터 및 응급용품을 제공합니다.
 (응급대원 및 구급차) 행사 규모에 따라 최소 의료인력과 구급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병원) 위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최소 2개 이상의 병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협력병원 연락처 예시〉

병원명	위치	담당자 / 연락처	이동거리(Km) 소요시간(분)	특이사항

□ 소방 및 전기

TIP

소방 및 전기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대회/훈련 사고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방) 대회/훈련 장소의 소방관련 용품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히 설치되고 관리되는 지에 대해 대회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소방책임자와의 면담 및 관련 서류, 기록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고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치안

TIP

치안유지, 경비, 테러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필수) 치안유지, 경비, 교통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테러방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시설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등을 통하여 대테러 센터에 테러예방, 현장지도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추진합니다.

2

표준안전계획서

□ 위생

TIP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식품, 질병 등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설물 위생) 모든 시설물은 참여자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음료 등) 식품위생법상 인가된 제품 및 위생상 안전한 식음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숙박업허가’를 받은 곳 중 위생상태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질병) 필요한 경우, 질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8 위급상황발생시 대응

□ 일반 요령

TIP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응급구호조치, 지원요청 순으로 대응합니다.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스포츠안전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TIP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인지, 119신고, 처치 및 도움 순으로 대응합니다.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응급처치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TIP

초동대처 ⇨ 지진피해신고 ⇨ 안내 ⇨ 대피유도 순으로 행동하도록 합니다.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풍, 대설,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

TIP

각 재난 상황에 따라 경기/훈련의 연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합니다.
 *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행한 ‘풍수해·지진대응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고지 및 통제

□ 안전고지

TIP

대회 및 훈련 전 또는 기간 중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고지를 해야 합니다.
 (시설 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장소, 위치도, 비상 연락망 등)

□ 안전 동의

TIP

참여자 안전과 관련된 사안 행사 개최 전 또는 행사일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여자의 동의사항(안)>

구분	동의내용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건강상태	질병/질환, 약물복용, 알러지 증상 등
일반동의	경기/안전 관련 규정 숙지, 안전고지 내용 숙지, 지시 및 통제에 따름, 안전관련 행동 등 불응시 퇴장 가능, 사진, 영상 등 촬영/활용 가능

2

표준안전계획서

통제



대회 및 훈련 장소에서 참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통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10 보험 등 가입여부

상해 등의 대비를 위한 (주최자)보험 가입 확인

가입여부	가입기관	보험명칭	보장일반	보장범위		
				사망	사고	장애 등
<input type="checkbox"/> 가입			기간/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가입						

* 기타 보험관련 보장내용 등 필요사항 명시

11 추진일정

안전관리 계획 추진일정(표) 예시

추진내용	월별실적(누계)	목표 (00회)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계획 수립 및 목표설정															
안전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위기관리계획 수립															
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안전인력 구성															
안전인력 선발 및 교육															
안전인력 배치 및 활용															
대회/훈련 장소의 선정															
대회/훈련용 시설 및 장비 확보/운영															
부대시설및장차(대회용)															
선수단의 안전점검															
심판/경기감독관 등의 안전점검															
대회/훈련 운영의 안전점검															
응급의료서비스															
소방 및 전기 점검															
행사 치안 및 위생 관리															
위급상황발생시 대응															
안전고지 및 통제															
주최자 보험 등 가입															

2

표준안전계획서

핸드볼 안전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운영자용)

※ 점검 결과(안전 O , 요주의 △ , 불안전 X , 해당없음 中 택1)

구성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안전계획수립	대회 계획수립 시, '안전 계획수립 및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안전계획 수립 시, 내부 및 외부 안전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가?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대응이 가능한가?	
	대회 안전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	
	안전관련 문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안전인력	대회 안전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전인력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안전인력은 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여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안전인력은 적정규모로 배치되고 적정 위치에서 활용되고 있는가?	
경기장	경기장은 안전성, 수용인원, 경기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는가?	
	시설 및 장비는 대한핸드볼협회 경기규칙/규정을 고려하여 구비하고 있는가?	
	운영본부, 주차장, 관중석, 무대 등의 부대시설 및 장치 등을 적정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점검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경기운영	선수단은 자체점검을 통해 부상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심판/경기감독관은 각종 재난(천재지변, 미세먼지, 오존 등) 상황부터 경기장 내부의 위험요소 등을 확인 또는 점검한 후 적절한 조치하고 있는가?	
	모든 관계자는 대회 장소 및 관람객 등을 위한 안전 점검 및 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응급의료/ 화재/치안/위생	대회기간 중 부상, 사고 등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소방 및 전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대회 사고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치안유지, 경비, 테러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식품, 질병 등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가?	
위급상황 대응	위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상황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안전고지/통제	대회 시, 모든 참여자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 있는가?	
	스포츠안전동의서 및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상황에 따른 적절한 통제를 통해 선수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는가?	